

강원도 학생인권 조례안

강원도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학생인권	2
제1절 행복할 권리	2
제2절 평등권	2
제3절 자유권	3
제4절 교육 및 복지의 권리	6
제5절 자치활동 및 참여권	11
제3장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체계	13
제1절 학생인권위원회	13
제2절 학생인권참여단	15
제3절 학생인권센터	16
제4절 학생인권교육 및 홍보	18
제5절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학생인권실태조사	18
제6절 학생인권종합계획	19
제7절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20
제4장 보칙	22
부칙	22

강원도 학생인권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전단과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며 발전해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강원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와 유치원,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법적 절차에 따라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의 교원,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④ 학생의 인권은 유예될 수 없고 모든 학생은 현재의 삶에서 인권을 온전하게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4조(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교구성원은 인권을 학습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학생 인권

제1절 행복할 권리

제5조(인간으로서 존엄성)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생명권) ① 학생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및 보호자는 학생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리적·정서적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7조(환경권) ① 학생은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입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보호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녹지공간의 확대 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평등권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교육과 학습, 학교 등 교육 시설의 이용, 복지, 참여 등 모든 학교 활동에 있어서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②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인이나 보호자의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인종, 국적, 체류자격, 피부색,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및 형태, 임신 또는 출산, 임신중단 여부,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소득 및 경제 여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징계 및 형벌의 기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연애 여부 및 대상, 학력(學歷), 학교, 학년, 학업성적, 직업,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직업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도리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을 방지 해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학교구성원 간의 평등)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직원, 보호자에 대한 특권적 지위를 해소하고 학교구성원 간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혐오표현 및 명예훼손 금지)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8조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혐오적·차별적 언행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

하여 차별이나 명예훼손의 목적이거나 효과가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거나 유포, 모욕, 괴롭힘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포괄적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에서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자유권

제12조(의사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 ① 모든 학생은 자신의 행동과 진로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교육목적과 무관한 일을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강요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표현·집회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

② 학생은 타인의 동기와 신념에 대해 지지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⑤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내에 허용된 게시공간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으며, 학교는 그 게시공간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학생은 방과 후에 교외 문화행사와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양심·사상·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과 사상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3.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 행위

4. 학생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는 행위

5.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6.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 ⑥ 교직원은 학생이 사상이나 종교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시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특정 사상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치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법률에 따라 정당 또는 정당 부설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정당 또는 정당부설단체가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지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 ③ 학생은 사회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제1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직·간접적인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사이버폭력, 모욕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직·간접적인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사이버폭력, 모욕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직·간접적인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사이버폭력, 모욕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이 발생할 때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구조 및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직·간접적인 체벌, 모욕,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의 신고자 및 진술자를 누설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3항의 폭력에 대한 신고자 및 진술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법률에 따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화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복장, 두발, 화장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 및 착용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의 안전이 관련된 경우 해당 학생에게 목적과 이유를 밝힌 후 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일기장, 개인수첩 등의 사적기록물 작성을 강요하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이 폐쇄회

로 텔레비전(CCTV)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19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 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지문날인, 서명,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정보 주체로서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 예·결산 등을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21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징계절차는 학생인권을 존중하여 학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이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청구권의 보장 등 인권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을 잠재적 비위행위자로 간주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⑤ 학교는 징계의 집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 등은 징계를 위해 학생을 소환할 때 수업시간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수업을 대체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제22조(초상권 및 저작권) ① 학생은 자신의 얼굴 등 신체에 대한 촬영 게시, 노출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할 때 학생의 동의를 충분히 얻고 게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화상 수업 등 화면에서 학생의 얼굴 등 신체에 대한 노출을 강요할 수 없다.

④ 학생은 글, 그림, 음악, 사진 등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저작물에 대해 교육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만 학생의 동의를 얻고 사용, 복제를 할 수 있으며, 학생이 원하는 형태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성적자기결정권) ① 학생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

② 누구든지 학생의 상호 간 합의된 교제 등에 대해 비합리적인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 연애 경험, 성관계 경험 등을 이유로 학생을 모욕, 교육활동 등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주거권) ① 학생은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안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출, 취침 등 생활에서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기숙사 입주를 강요할 수 없다.

④ 학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자율학습·기숙사생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⑤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학교 기숙사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생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

제4절 교육 및 복지의 권리

제25조(좋은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와 교직원으로부터 학생 인격의 존중,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개발, 인권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관용, 성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평화, 자연환경에 대한 사랑 등 책임 있는 삶을 위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

생, 이주민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 교직원은 사교육을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으며,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원물품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이 학습자료 등을 준비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위기 가정 학생, 예술·체육활동 학생 등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⑨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복지와 인권 관련 시민단체 또는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⑩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6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쾌적한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휴게시설 등 학교의 각종 시설들을 학생의 복리에 맞게 확보하고 제11조에 따라 그 설계와 설치에서 평등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적절한 냉난방, 공기 질 관리, 위생관리를 통해 교실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해야 한다.
-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다양한 종목의 체육 시설을 마련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제반시설 등 여건을 마련하여 야 한다.
- 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화장실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아동 등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⑦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적절하고 안전한 탈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⑧ 학교 장 및 교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 공간의 이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안전할 권리) ① 학생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학교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정성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수련활동 등 교외에서 진행되는 교육 활동에 대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동수단, 활동장소 등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안전 위협요소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장은 등하굣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 관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 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일하는 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월경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교육과 편의를 위해 보조공학기구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자재 및 조리 과정을 통해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선호도, 영양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친환경 식자재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모든 학교에서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채식, 건강, 종교 등의 이유로 학생의 급식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급식의 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1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월경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월경 중인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 기구 확보 등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신 건강을 위해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정보접근권) ① 모든 학생은 자유롭게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장애, 언어, 경제적 수준 등의 이유로 그 접근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② 학생은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를 금지하거나 수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과정 상 필요한 평가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자기기의 사용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 생활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3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학의 기간을 정하고, 방학 기간에 별도의 교육활동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양교육,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 체험활동을 운영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35조(노동권) ① 학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학생의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하며, 노동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혹은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학생의 동의나 적법한 계약 없이 노동력 제공을 강요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한 현장실습생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와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학교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강원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른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위법한 근로계약서 작성 사례
2.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3. 노동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동의나 학생 간의 합의 없이 학생의 노동력 제공을 강요할 수 없다.

제36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조손가정 학생, 난민 학생, 이주인가정 학생, 북한이탈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학생, 성소수자 학생, 일하는 학생, 임신·출산 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 소수자 학생은 그 특성과 상황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소수자 학생의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알맞은 교육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소수자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는 소수자 학생이 교육활동, 일상생활 등 모든 학교생활에서 분리·배제·소외·구별·거부·제한이나 불리한 대우 없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 진로 및 취업, 교제, 문화활동 등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특성과 상황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상담, 법률지원, 인권옹호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과 시설의 이용 등 학교생활에서 완전하고 동등하며, 안전한 참여와 접근을 보장하도록 정당한 편의 및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이주인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난민 학생의 인권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이주인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난민 학생이 국적, 체류자격,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종교, 언어·문화적 차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입·전학 또는 편입학의 기회를 갖고 교육활동에 동등하게 참

여하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난민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⑩ 누구든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한부모가정 학생, 조손가정 학생, 난민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 장애 학생 등 가족형태, 학생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⑪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0항의 정보가 이미 누설된 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절 자치활동 및 참여권

제37조(학생의 참여권) ① 학생은 학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학교운영 등에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8조(학생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학생은 학생회장 및 부회장 등 학생대표, 학급회장 및 학급 부회장 등 학급대표 그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회 선출직 임원에 대해 성적, 징계 기록 나이, 학년, 교사추천 등과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9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학급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나이, 학년, 교사추천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및 임원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은 동아리를 자유롭게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는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된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 편성, 활동 공간 보장, 강사지원 등에 관한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⑤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4. 학생자치조직이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받을 권리
5. 학교 축제, 체육대회, 학예회 등을 기획·운영·평가할 권리

⑥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학교생활, 학생복지, 학생자치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의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8. 학교 및 교직원과 학교의 운영 등에 대하여 협의할 권리
 9. '강원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를 주관할 권리
- ⑦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야 한다.
- ⑧ 학교와 학생회는 학생자치조직이나 학생회가 아닌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⑨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은 교문 지도, 교내 순찰 등 학생단속에 학생을 동원할 수 없다.

제40조(학생회 인권부 설치) ① 학생회는 필요한 경우 교내 인권실태조사, 인권침해 상담 신고 등의 역할을 하는 학생회 인권부(이하 "인권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 인권부를 설치한 경우 학생회 인권부장은 제70조에 따른 교내 학생인권보호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회 인권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① 학생회는 학교운영과 교육정책에 관한 안건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생대표를 두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③ 학교는 학생회에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2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항의 의견이 제출될 경우 학교규정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학교규정 제·개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학생의 비율을 1/2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④ 학교규정 제·개정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학내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⑤ 학교는 학생회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 토론회, 학내 공청회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3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강원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내외 학생자치조직은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 제54조에 따른 학생인권참여단을 통하여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4조(권리의 보호하고 증진할 권리) ① 학생은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45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제44조에 따른 학생회 인권부, 제57조에 따른 교내 학생인권보호위원회, 제70조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교육지원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위원회

제46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서 및 학생인권영향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그 밖의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과 권리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그리고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8. 학생인권센터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에 관한 평가
 9. 학생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에 대한 다른 기관,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7조(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학생인권참여단 소속 구성원 2인
2.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1인
3. 교육감에게 추천받은 학생인권 담당 공무원 1인
4. 인권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1인
5. 교원단체(교원노조 포함)가 추천한 교원 2인
6.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보호자 2인 이내
7. 학생인권참여단 외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한 초등학생 2인, 중학생 2인, 고등학생 2인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청소년이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지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제2항에 위배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4. 제3항의 지위를 잃은 사람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⑧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직이 궐위될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8조(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2. 임시회 :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감이 추천한 교육청 소속 학생인권 공무원 1명이 담당한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학생인권참여단

제50조 (학생인권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구로서 학생인권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학생인권참여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②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 ③ 학생인권 참여단을 구성할 때 지역, 성별, 학교급, 학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인권 참여단은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강원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강원도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 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학생인권침해 사례조사 및 조사된 학생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구제신청
 9. 교육청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학생인권실태조사 실시
 10. 학생인권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및 보고
 11. 그 밖에 학생인권과 관련된 사항

제51조(학생인권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참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호선하며,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참여단 회의 진행
2. 참여단 회의 안건 수집 및 배부

3. 참여단의 대표

② 참여단은 만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또는 강원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③ 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내 학생회 임원 중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받은 사람 중 추첨 10인 이내
2. 공개모집 절차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중 추첨 10인 이내
3. 제40조에 해당하는 소수자 학생 중 별도의 절차를 거쳐 교육감에게 추천받은 사람 10인 이내

④ 참여단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아야 하며, 교육감은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참여단 구성원에 대하여 성적지향 등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제5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학생인권센터

제53조(학생인권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증진과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과 권리의 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홍보 및 학생의 인간감수성 증진
4. 인권자료실 운영 및 관리, 홍보
5. 학생인권상담실을 통한 인권 상담 및 운영
6. 교직원 학생인권 연수 및 학교의 학생인권교육 지원
7. 인권과 권리의 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8. 학생인권참여단 활성화·지원·보조
9. 그 밖에 인권과 권리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상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④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센터는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결과를 포함한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분기별로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는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결과를 포함한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분기별로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센터는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참여단,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제54조(학생인권옹호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
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
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
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며,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및 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과
관련 법령,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
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 4. 학생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 8.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인권 참여단의 업무 지원
 -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
고하여야 한다.

제56조(학생인권상담실)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인권상담실을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하며, 각호의 내용에
대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도민 등에게 적절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 2.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권리구제신청 절차
- 3. 학생인권침해의 기준·판단근거 지침
- 4. 제71조제2항에 따른 권리구제 신청 및 보고 업무
- 5. 그밖에 학생인권에 관련한 내용

제57조(인권자료실) 교육청은 인권에 관련한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인권자료실을 두며,
그 관리 및 운영은 학생인권센터가 한다.

제4절 학생인권교육 및 홍보

- 제58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기마다 2시간 이상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④ 교육청은 학교의 학생인권교육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개발 등에 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대학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학교는 학생의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인권교육에는 「강원도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학생인권과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9조(교직원 및 보호자 인권연수)** ① 교육감은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매년 3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개발 등에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육전문직원에게 대하여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게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제60조(강원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강원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 학생인권의 날’에 교육감, 학교는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도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제61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 관련 대상을 고려한 연령 및 집단별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이 조례 전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5절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학생인권실태조사

- 제62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

야 하며, 정책 등의 집행 후에는 학생인권영향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 및 학생인권영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3조(학생인권실태조사) ① 학생인권센터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학생인권참여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 참여단은 학생인권실태조사의 결과를 학생인권센터에 서면 통보하고 학생인권센터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청 및 학교는 학생인권증진을 위해 학생인권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및 운영 전반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하여야 한다.

제6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6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및 협조체제 구축
8.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9. 학생인권 및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제6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66조에 따른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의견수렴)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1항의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 소수자 학생의 자유롭고 안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67조(교내 학생인권보호위원회 설치) ① 학교는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공동체 내의 자체 해결을 위해 교내 학생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② 학생, 학생회는 학생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교내 학생인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교내 학생인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인권보호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학생인권보호위원으로 구성되며, 학생인권보호위원의 위원 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수와 같다.

④ 교내 학생인권보호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는 학생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회 정·부회장은 당연직 학생인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된다.

⑤ 교내 학생인권보호위원회의 의장은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교내 학생인권보호위원회의 의장은 개의하여야 한다.

1. 재학생, 교직원, 재학생의 보호자의 신고

2. 제44조 3항에 따른 학생회 인권부의 신고

3. 재적 학생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거나 학생회 정·부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⑦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토론을 거친 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교내 학생인권위원회는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심의하여야 한다.

⑨ 교내 학생인권보호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학생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8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60조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69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71조제1항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증거 제출을 강요당할 수는 없고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간주하지 아니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 학생참여단과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0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피해학생에게 제시하고 구제조치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71조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가해자나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71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구성원은 제71조의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72조(학칙과 여러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학칙과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칙과 여러 규정을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55조에 따른 위원회(학생인권참여단)는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3개월 안에 구성해야 한다.